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높은위험]

메리츠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메리츠e-일등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리츠e-일등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메리츠e-일등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57627)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메리츠자산운용(주) (TEL. 02-6320-3000)
4. 판 매 회 사 :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 및 금융투자협회(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5. 작 성 기 준 일 : 2013. 12. 20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4. 1. 2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모집(매출) 총액 :10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인터넷 전용펀드로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사 홈페이지에 내용 게시

※ 이 간이투자설명서[예비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자가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별도로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경우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동 증권(일괄)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간이 및 예비포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업종 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일등기업 주식에 장기 투자함으로써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수익률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인터넷 판매 전용 펀드**로써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와 비교했을 때 획기적으로 적은 수수료로 상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투자자의 수익극대화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운용전략

-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펀드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용

- 업종 일등기업 및 Bottom up 분석^{주 1)}을 통한 저평가 우량종목 선정 및 거시경제/산업경기의 Top Down 분석^{주 2)}을 통해 최적의 자산배분 전략구사

주1) Bottom-up(상향분석)방식 : 기업분석→ 산업분석→ 거시경제 분석하는 방식

주2) Top-Down(하향분석)방식 : 거시경제 분석→ 산업분석→ 기업분석처럼 분석범위를 좁혀 나가는 방법.

(2) 세부운용전략

일등기업주식으로 정의되는 업종 일등기업, 시가총액 상위대형주, 업황호전 예상되는 종목을 편입

- **업종 일등기업 주식** : 업종 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일등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에 대한 장기투자 병행
- **국내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위주의 투자를 통하여 투자자산의 안정성 최우선 확보
- **업황호전이 예상되는 종목** : 경기 사이클에 의거 업황 호전이 예상되는 산업을 발굴하여 업종 평균 이상의 수익력을 갖춘 우량주에 투자하여 시장대비 초과 수익률 시현

다만, 주식의 편입시점에는 일등기업 주식이었으나, 이후 일등기업주식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 기매입된 주식은 일등기업주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1) ROE (자기자본이익률, Return On Equity) : 자기자본에 대한 기간이익의 비율을 말하며 자기자본이익률은 주주 지분에 대한 운용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재무관리와 증권분석에서 중시되는 지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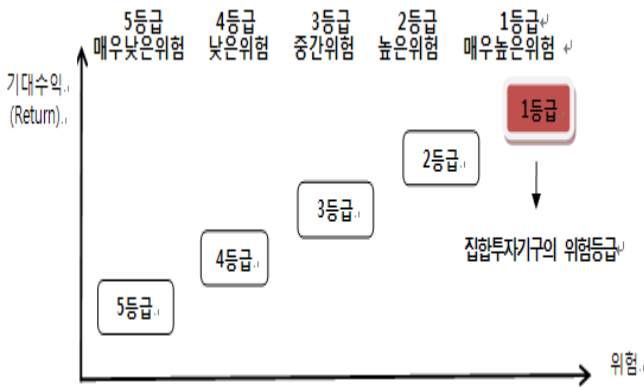
*비교지수 = KOSPI*100%

3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상장주식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해지 위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환매제한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채권 등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큼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매우 높은 위험등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 기구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며, 투자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과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메리츠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권오진	1968	책임 운용역	-	-	-메리츠자산운용 주식운용매니저(현재)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 주식운용매니저 -도이치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매니저 -스커더인베스트먼트코리아 주식운용매니저 -대우투자자문 리서치애널리스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	
김홍석	1969	부책임 운용역	17 개	1,237 억원	-메리츠자산운용 주식운용매니저(현재)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 주식운용매니저 -도이치투신운용 리서치애널리스트 -스커더인베스트먼트 리서치애널리스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1 개	70 억원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f.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	--------	--------	--------	--------	-------

	12.12.21 ~13.12.20	11.12.21 ~12.12.20	10.12.21 ~11.12.20	09.12.21 ~10.12.20	08.12.21 ~09.12.20
메리츠 e-일등기업증권 투자신탁[주식]	-2.49	3.45	-12.58	22.89	47.98
비교지수	-0.81	11.51	-11.25	22.66	39.47

Ⅱ. 매입·환매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메리츠e-일등기업	제한없음	-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부과기준		환매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집합투자 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 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및 비용	총보수비 용(TER)	증권거래 비용
메리츠e-일등기업	0.2500	0.2500	0.0250	0.0190	0.0029	0.5469	0.5469	0.8929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2.06.19 ~ 2013.06.18]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2.06.19 ~ 2013.06.18]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단, 2013년 8월 28일까지 발생분에 한함)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

(단위: 천원)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56	176	306	687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가.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

특세 등(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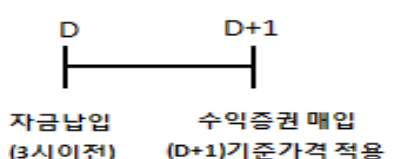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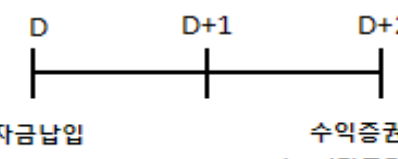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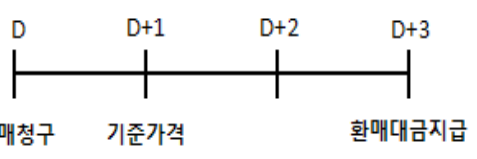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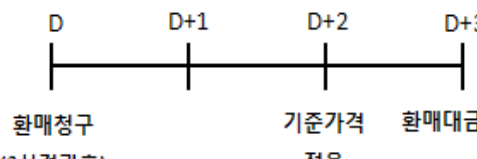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계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계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meritzam.com) · 판매회사 ·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구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경과 후
매입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p>  <p>자금납입 (3시이전) 수익증권 매입 (D+1)기준가격 적용</p>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p>  <p>자금납입 (3시경과후) 수익증권 매입 (D+2)기준가격 적용</p>
환매	<p>-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p>  <p>환매청구 (3시이전) 기준가격 적용 환매대금지급</p>	<p>-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이 지급</p>  <p>환매청구 (3시경과후) 기준가격 적용 환매대금지급</p>

4.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요약 재무정보

(단위:원)

항 목	대차대조표		
	제 7기 (2013.06.18)	제 6기 (2012.06.18)	제 5기 (2011.06.18)
운용자산	4,181,214,019	5,548,931,232	16,822,727,632
증권	4,070,658,700	5,410,385,500	16,785,929,297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10,555,319	138,545,732	36,798,335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061,970	34,087,526	105,612,414
자산총계	4,183,275,989	5,583,018,758	16,928,340,046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7,503,983	51,242,320	35,102,241
부채총계	7,503,983	51,242,320	35,102,241
원본	5,060,454,647	6,610,232,385	14,019,152,520
수익조정금	-39,084,866	-106,195,900	-2,382,070,069
이익잉여금	-845,597,775	-972,260,047	5,256,155,354
자본총계	4,175,772,006	5,531,776,438	16,893,237,805

(단위: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7기	제 6기	제 5기
	(2012.06.19 - 2013.06.18)	(2011.06.19 - 2012.06.18)	(2010.06.19 - 2011.06.18)
운용수익	14,283,590	-936,480,353	5,392,813,362
이자수익	5,618,488	15,931,551	25,936,523
배당수익	57,080,600	65,354,960	295,882,805
매매/평가차익(손)	-48,415,498	-1,017,766,864	5,070,994,034
기타수익	255,828	1,279,051	5,983,478
운용비용	33,438,076	34,897,656	136,350,445
관련회사 보수	26,086,596	34,897,656	136,350,445
매매수수료	7,351,480	0	0
기타비용	1,088,735	2,161,089	6,291,041
당기순이익	-19,987,393	-972,260,047	5,256,155,354
매매회전율	382.71	442.20	352.9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 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투자설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메리츠 e-일등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간이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판매직원 성명: 서명) -----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메리츠 e-일등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간이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듣고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들었고 권유받았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